

순환자원 인정제도

1 “순환자원”이란? (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5호)

- “순환자원”이란 폐기물 중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제2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

2 순환자원의 인정기준 (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1조)

-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을 것
- 경제성이 있어 유상(有償)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
-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물건이 아닐 것
 - 소각(燒却) 또는 매립하거나 해역(海域)으로 배출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
 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활동에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.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 또는 물건은 제외한다.
 -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(왕겨, 쌀겨 및 커피찌꺼기만을 사용하여 제조한 경우만 해당한다)
 - 바이오디젤(폐식물성유·폐동물성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연료를 말하며,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한정한다)
 - 성토재, 복토재, 도로의 기층재·보조기층재, 채움재 등 토양·지하수·지표수에 접촉시켜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
-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물질 또는 물건의 순환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용도에 따라 사용될 것

3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(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2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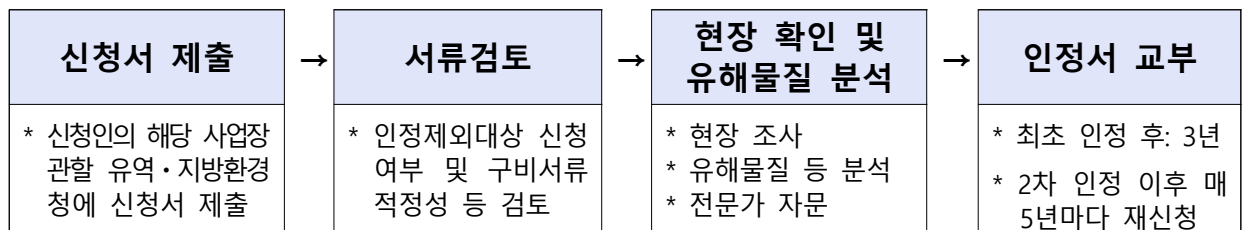
- 순환자원의 신청 및 인정기관
 - 순환자원 신청인 : 순환자원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·단체(생활·사업장폐기물배출자, 폐기물처리업자, 폐기물처리신고자 등)
 - 순환자원 신청 및 인정기관 : 7개 지방환경관서의 장(유역·지방환경청장)
- ※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」제13조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
구 분	관 할 구 역	연 락 처
한강유역환경청	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	031-790-2815
낙동강유역환경청	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, 경상남도(마산시, 양산시, 김해시, 밀양시, 거제시, 통영시, 사천시, 진주시, 거창군, 함양군, 산청군, 합천군, 의령군, 창녕군, 고성군)	055-211-1626
금강유역환경청	대전광역시, 충청남도, 충청북도(청주시, 보은군, 옥천군, 영동군, 진천군, 증평군), 세종특별자치시	042-865-0733
영산강유역환경청	광주광역시, 전라남도, 경상남도(남해군, 하동군), 제주특별자치도	062-410-5215
원주지방환경청	강원도, 충청북도(충주시, 제천시, 괴산군, 음성군, 단양군)	033-760-6084
대구지방환경청	대구광역시, 경상북도	053-230-0718
전북지방환경청	전라북도	063-238-8836

- **기술검토기관** : 한국환경공단 등 자원순환 관련 전문기관

※ 순환자원 인정 및 순환자원 사전컨설팅 문의 : 032-590-5063, 5066, 5067(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처 자원순환성과부)

○ 순환자원의 인정신청 절차.방법



※ 순환자원 인정 수수료: 최초 인정 시 40,000원(품목별), 재 인정 시 15,000원(품목별)
순환자원 최초 인정 기간 : 3년 / 순환자원 재인정 기간 : 5년

4 순환자원 인정 혜택

- 현행법상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 및 처리하도록 규제받고 있으나,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경우 배출되는 시점에서 더 이상 배출·운반·보관·사용 등에 있어 폐기물 규제를 받지 않으며,
- 인정받은 순환자원을 제품의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사업장은 원자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운반·보관·사용